

데이터거래의 법적 쟁점

「데이터 3법 시대의 과제: 가명처리, 연구목적 활용, 데이터 거래」 웨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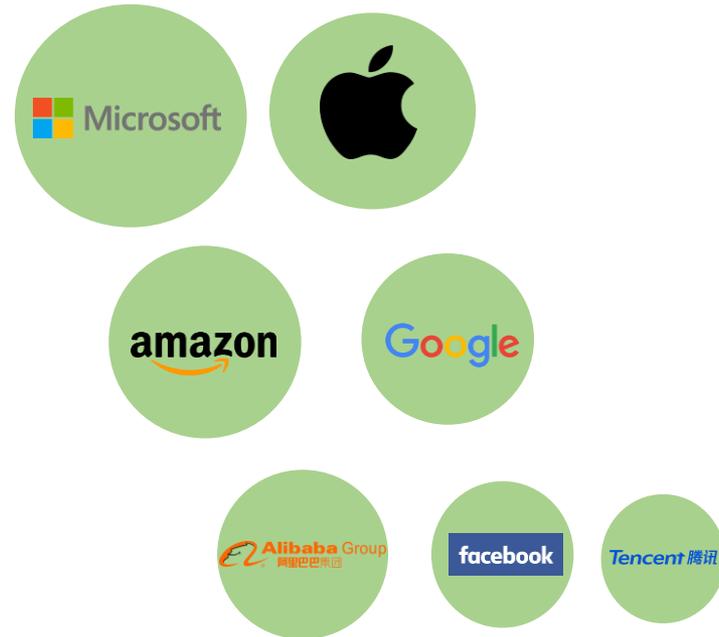
데이터거래의 법적 쟁점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데이터활용의 핵심, 데이터거래

- ❑ Big Techs, Data Economy
- ❑ Data Monopoly, Data Lock-in
- ❑ Data Sharing, Data Re-use



데이터의 구분과 데이터에 대한 권리

Setting the Scene

데이터거래를 정면에서 규율하는 법은 없음

데이터는 매우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 개념

데이터거래에는 데이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여러 법령이 모자이크식으로 적용

출발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

현행법상 데이터에 대하여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가 논의의 출발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백, 법적 위험을 계약내용에 반영

데이터에 대한 권리

데이터 소유권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cf. 일본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데이터거래의 구조와 쟁점

데이터거래의 구분

日本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 契約ガイドライン(2018)

-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공용형 계약의 구별

EU, On the Free Flow of Data and Emerging Issues ... (2017)

- Open Data Approach, Data Monetization on a Data Marketplace, Data Exchange in a Closed Platform

데이터거래 일반

□ 데이터의 처분 가능성

- 사실상 처분 가능성
- 처분금지: 데이터 제공 조건, 영업비밀,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등

□ 데이터거래와 경쟁(법)

- 데이터에 의한 경쟁상의 우위
- 이른바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 거래상 지위 남용, 데이터독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

데이터거래 일반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 가치평가/산정 방법의 부재/미발달 (데이터 브로커/딜러, 데이터 시장의 형성)
- 대안으로서 이익참여모델, 교환(상호이용허락)모델

데이터거래의 주요 규율대상

□ 적용되는 법

- **준거법**: 데이터거래계약 vs 데이터에 대한 권리
- 데이터거래계약의 성질 결정

□ 거래 대상과 범위의 특정

- 데이터 포맷, 데이터 제공방법
- **영업비밀** 기타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관리
-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대상인 경우 이용/이용목적의 제한 등

데이터거래의 주요 규율대상

□ 이용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규율

- 목적 특정 → **Re-use** (추가 처리/제3자 제공) **제한**
- 파생 데이터 등의 귀속/이용관계

□ 책임배분

- 데이터 수량과 품질의 흠 → 담보 범위
- 제3자의 권리(주장)
- **제3자에 대한 책임**(저작권 등)의 인수

개인정보인 또는 개인정보였던 데이터거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근거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기본서비스와 결부되지 아니하는 한 대가 제공 가능
 - ❖ 통계작성, 과학적연구등을 위한 제3자 제공 + **가명처리**
- 사후관리
 - ❖ 데이터 이전/무제한적 접속/제한적 접속 및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검토**
- 가명/파생 데이터의 **처리 정지/철회**에 대한 대응 → 재추적과 **정산**

개인정보인 또는 개인정보였던 데이터거래

□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거래

- 재식별위험에 대한 대응
 - ❖ 사후 관리적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 ❖ 재식별위험이 현실화하는 경우의 청산 관계
- 결합 정보의 생성과 데이터거래
- 투명성과 가치 공유

질의 · 응답

감사합니다